

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
2005. 12. 16(금) 10:00

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5. 11. 21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5호 - 72호
- 라. 상정일자 : 2005. 12. 6

2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서의
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
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

3. 기금운용계획안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5년말 현재액	2006년 운용계획안			2006년말 예상액
		수 입	지 출	차액 (적립)	
합 계(6개기금)	1,983,826	415,659	95,210	320,449	2,304,275
아름예술제진흥기금	370,000	42,210	12,210	30,000	400,000
체 육 진 흥 기 금	24,788	2,270	0	2,270	27,058
식 품 흥 기 금	25,999	51,270	61,000	△9,730	16,269
저소득자녀장학기금	341,975	61,900	22,000	39,900	381,875
노 인 복 지 기 금	823,474	124,690	0	124,690	948,164
여 성 발 전 기 금	397,590	133,319	0	133,319	530,909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○ 총 6개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, 적립금의 이자 및 일반 회계 전입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30,000천원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60,000천원, 노인복지기금 100,000천원, 여성발전기금 120,000천원 등 총 310,000천원이며,

○ 지출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예술제 행사 보조금으로 10,000천원,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20,000천원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17,500천원, 등 총 47,50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, 그 외 잔여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
○ 아림예술제 행사관련 보조금 10,000천원은 아림예술제에 지원되는 군비의 규모에 비하여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,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20,000천원은 수입액(15,163천원)보다 지출액(4,837천원)이 더 많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은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,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인당 150천원에서 350천원을 지급하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,

○ 전체 기금에 대하여 기금 설치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하였거나 그 효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새해 업무보고시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

5. 기금운영계획안 수정내역 : 해당없음

6.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 : 해당없음

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
계수조정은

○ 총 6개기금의 수입은 23억 9천9백3십2만3천으로 전년도 이월
액, 적립금의 이자 및 과징금,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구성되어
있으며

○ 지출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예술제 행사 보조금으로
12,210천원,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좋은식단 홍보물
제작 등 61,000천원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
22,000천원, 등 총 95,21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, 그 외 잔여액은
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
- 아림예술제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는
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05. 12. 16(금) 10:00

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거창군재난관리기금

산업건설위원회

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 : 2005. 11. 21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
라. 상정일자 : 2005. 12. 7.

(제12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마. 의안번호 : 제 2004 - 72호

2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.

3.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

(단위:천

원)

구분	2005년말 현재액	2006년 운용계획안			2006년말 현재액
		수입	지출	증감	
계	633,245	121,032	0	121,032	754,277
재난관리기금	633,245	121,032	0	121,032	754,277

4.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

재난관리기금

○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
재난

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
하 여 금년부터 지방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
1에 해 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
편성된 기금 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임.

○2005년도 기금운용안을 전년도 이월금 633,24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
금

94,960천원, 예금이자수입 26,072천원으로 되어 있으며, 지출계획은
없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: 해당없음

7.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 : 해당없음